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1.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07호로 2021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개정 '20. 12. 29. 시행 '21. 1. 1.)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 삭제
(안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1.10.14.~11.3.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되어 현행 조례상 체납처분 유예대상자인 성실납부자의 대상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지방세법」 제74조 등이 개정되어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인 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통합하여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었는 바,
 - 주민세 5개 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과세 근거를 명확화한 것으로 보임.

「지방세법」 개정 내용(2021.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u>균등분</u> ”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1. “ <u>개인분</u> ”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 <u>재산분</u> ”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 <u>사업소분</u> ”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 -----.
3. “ <u>종업원분</u> ”이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 <u>종업원분</u> ”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 -----.

- 즉,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한 것임.

〈 주민세 개편 내용 〉



-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중 성실납부자 대상에 ‘주민세 재산분’ 규정이 있는 바, 이를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지 않고 삭제하려는 것은 성실납부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경과 조치)에서는 기존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경우 성실납부자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실납부자의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8. 생략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